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66
----------	------

2016년 1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2월 6일
3. 상정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의결)를 구하고자 함.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법」 제152조1)에 따라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2)’에 가입하고, 동 협의회에서 정한 관계 규약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제152조제2항)에 따라, 이의 동의를 받고자 서울시장이 제출 한 것임.

1)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로서 공식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향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6년 12월 현재, 동 승인을 위해 협의회 소속 지방단체별로 각 지방의회에 관련 규약 안을 제출한 (또는 의결 받은) 상황임.

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협의회 운영 현황

-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목적(규약안 제1조)”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로, 지난 ‘15년 9월에 구성(최초 27개 도시로 구성) 된 것임.
-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정보 및 우수사례를 상호 교환하고,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규약 안 제2조) 함.
- 동 협의회에는 ‘16년 11월 현재 전국의 37개의 지방자치단체(광역 4개, 기초 33개)가 참여 중이며, 서울시는 지난 ‘16년 5월에 가입함. 협의회의 구체적 연혁은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추진 연혁>

- ‘15. 9.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임원진 선출, 협의회 규약 확정 등
- ‘15. 11. 해외 선진 아동친화도시 방문조사 실시 :
- ‘16. 1. 해외 방문조사 참여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 실시 : 해외 아동친화도시 선진사례의 국내 적용방안 등 논의
- ‘16. 3.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임시회 개최 : 2016년 사업계획 논의 및 지자체 아동정책 우수사례 발표·소개
- ‘16. 3~4 유니세프 세계 물의 날 캠페인 공동 홍보
- ‘16. 4 지방정부협의회 실무진 회의 : 2016년 사업계획 관련 세부논의
- ‘16. 5.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 ‘16. 9. 아동친화도시 관련 워크숍 및 임시총회 개최 ※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 현황 : 별첨자료 1

3. 협의회 가입의 필요성 및 법적요건 등

-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³⁾’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도시를 총칭하여 이르는 것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증은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국)에서 실시하고 있음⁴⁾.
- 아동친화도시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돕는 추진체계라 할 수 있는바, 서울시가 동 협의회의 참여

3)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이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16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에 비준하였음.

4) ‘16년 11월 현재 국내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성북구, 부산시 금정구, 군산시, 완주군, 서울시 도봉구로 총 5개임.

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협의회 가입의 필요성과 별개로, 동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법적요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할 수 있는데, 여기 협의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적 요건은 그 부합성이 있다고 보여 짐.
- 다만, 지방자치법령상 행정협의체 구성요건 및 사전절차 이행 관련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됨. 먼저,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하며(제152조),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여기서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제153조5)).
 - 그러나,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동 협의회는 구성주체를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로 두고 있고, 협의회 가입도 유니세프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제출된 규약안 제4조제4항에서는 “사무국장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협의회장이 협의하여 임명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유니세프에서 추진해왔기 때문으로 그 배경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 하지만, 이제 동 협의회가 지방자치법령에 의거한 행정협의회로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직원)만을 구성원으로 하여야하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구성주체가 될 수 없고, 동 협의회는 실무적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될 사무국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협의회 구성원 이외의자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협의·임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다만, 만약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동 협의체에 역할 할 수 있다면 자문기구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짐.
 - 같은 맥락에서 동 규약안의 제명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인바, 여기서의 ‘유니세프한국위원회’라는 용어가 제명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5)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 구성 이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 규약을 지방의회에 의결 받고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 협의회는 이미 지난 '15년 9월에 구성하여 임원진을 선출(※별첨자료2: 현재 임원진 구성 현황)하고 규약을 확정 하는 등 실제적 활동을 해 왔던바, 상기의 법령상 사전 이행 조건을 따르지 않은 채 운영해 온 측면이 있음. 물론 서울시의 가입 시기가 '16년 5월로 최초의 구성원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규약안에 대한 의회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현재 서울시장은 고문의 직위를 갖고 있음)해 왔던 점에서 사전 조건 미이행은 동일한 문제로 지적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려는 금번 규약안에 대한 취지에 공감함. 하지만, 지방자치법령상 협의회를 추진하려면 의회에 사전에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해 온 점은 문제가 있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 현재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단독으로 동 규약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된다 할 것임. 하지만 동 규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유니세프위원회'가 사무총장의 임명권을 갖는 것에 대한 적절성 문제 및 제명상 '한국유니세프위원회' 용어 포함의 적절성 여부 등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 이는 향후 동 협의회가 행정자치부 등록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서울시는 규약안이 갖은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 바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자료 1】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 2016년 11월 16일 현재

지역	자치단체명
강원	-
경기	광명시, 오산시, 수원시, 시흥시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경남	-
경북	구미시, 영주시
대구	중구
대전	유성구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송파구, 강서구, 도봉구, 노원구, 강동구, 성동구, 금천구, 종로구, 서대문구, 광진구
인천	서구
전남	광양시, 순천시
전북	완주군, 군산시, 전주시
충남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충북	음성군, 충주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별첨자료 2】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체계도 및 임원현황>

직 위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직 위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회 장	서울 성북구	김영배	고 문	광주광역시	윤장현
	서울 송파구	박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부회장	부산 금정구	원정희		서울특별시	박원순
	경기 오산시	곽상욱		부산광역시	서병수
	충남 아산시	복기왕		전북 군산시	문동신
	전북 전주시	김승수		경북 영주시	장욱현
			충북 충주시	조길형	
			감 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1566
----------	------

제출년월일 : 2016년 12월 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의결)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 (안 제2조)

-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나. 협의회 구성 (안 제3조)

- 1) 참여 지방자치단체 : 별표 참고

다. 임원(안 제4조)

- 1) 협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 5인이내, 감사2인, 고문으로 구성

라. 회의 및 의결(안 제6조)

- 1)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장이 됨
- 2)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 3)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경비부담(안 제12조)

- 1)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

바. 회계보고 및 결산(안 제13조)

- 1)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함
- 2)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가족담당관 아동복지권리팀 안호준(☎2133 - 518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제1조[목적]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협의회는“별표”의 지방정부로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된다.

제4조[임원 및 조직]

-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부회장은 1권역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협의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장이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소집 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 ① 협의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며,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자체 별 연회비를 책정할 수 있다.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협의회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별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2016. 11. 16 현재)

지역	자치단체명	비고
강원	-	
경기	광명시, 오산시, 수원시, 시흥시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경남	-	
경북	구미시, 영주시	
대구	중구	
대전	유성구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송파구, 강서구, 도봉구, 노원구, 강동구, 성동구, 금천구, 종로구, 서대문구, 광진구	
인천	서구	
전남	광양시, 순천시	
전북	완주군, 군산시, 전주시	
충남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충북	음성군, 충주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